

서울동부지방법원 2015. 6. 24 선고 2015나20157(본소), 2015나20164(반소)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· 소유권이전등기]

전 문

원고(반소피고), 항소인

A

피고(반소원고), 피항소인

B

변론 종결 2015. 6. 1.

판결 선고 2015. 6. 24.

제 1 심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. 12. 11. 선고 2013가단63241(본소), 2014가단122413(반소) 판결

주 문

1. 원고(반소피고)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본소, 반소를 통틀어 원고(반소피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가.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.

나. 피고(반소원고, 이하 '피고'라고만 한다)는 원고(반소피고, 이하 '원고'라고만 한다)에게, 1) 서울 광진구 D 대 32㎡ 중 별지2 도면 표시 1, 2, 3, 4, 11, 12, 13, 14, 6, 7, 8, 9, 10,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가)부분 17㎡, 별지2 도면 표시 11, 4, 5, 13, 12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7㎡, 별지2 도면 표시 13, 5, 6, 14, 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다)부분 5㎡ 지상 연와조 부속건축물 및 담을 철거하고,

2) 위 (가)부분 17㎡, (나)부분 7㎡, (다)부분 5㎡를 인도하며,

3) 2006. 4. 3.부터, 제1)항 기재 (가)부분 17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60,73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제1)항 기재 (나)부분 7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8,991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, 제1)항 기재 (다)부분 5㎡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2,137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.

다.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.

2. 반소 청구취지

원고는 피고에게 서울 광진구 D 대 32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1의 각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2㎡에 관하여 2013. 1. 29.자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이 유

1. 제1심 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제10쪽 제5행 및 제15행의 '2006. 9. 10.'을 '2006. 6. 16.'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피고에 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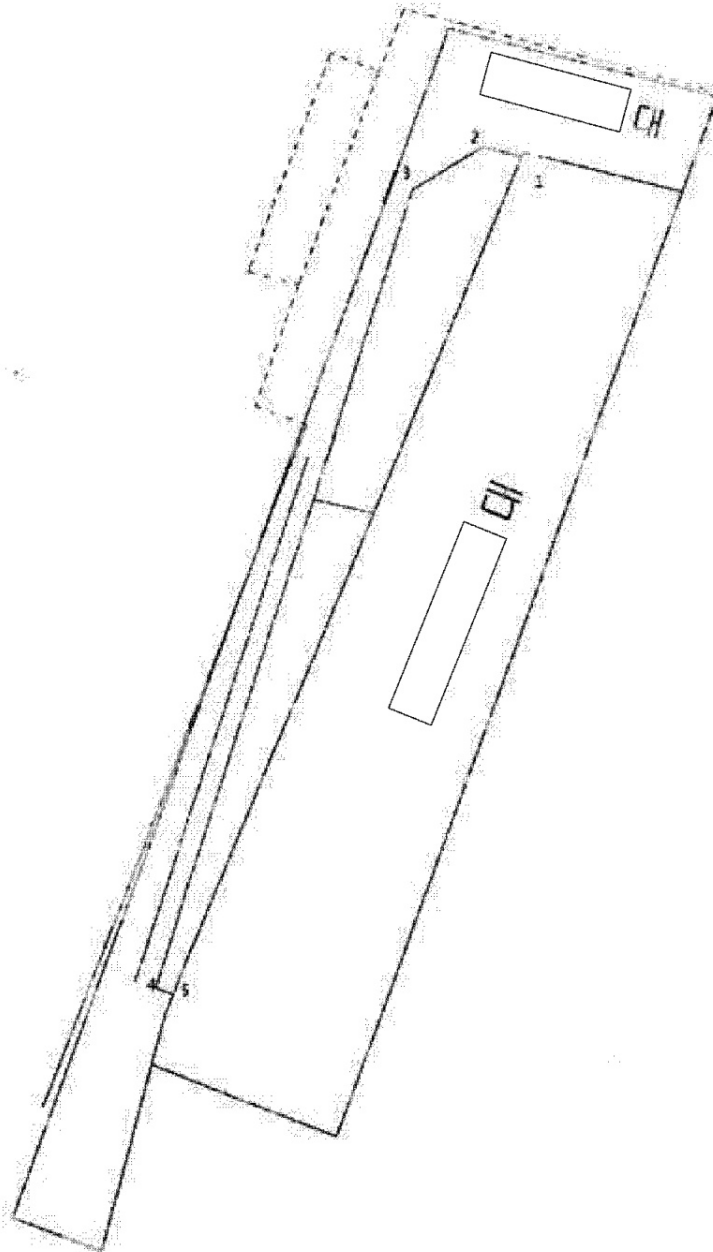
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염원섭, 판사 조원경, 판사 정현식

별지1

도면

서울특별시 광진구



별지2

도면

